

# IV

## 근로·자녀장려금



2020

종교인소득 신고안내



## 1 종교인소득과 근로·자녀장려금

종교인 소득에 대한 신고방식에 관계없이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근로·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음(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3 및 제100조의 28)

## 2 근로장려세제(EITC)

- 소득이 적은 근로자·자영업자 가구 등에 대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급하여 소득을 지원하고 근로를 유인하는 제도
- 소득, 재산 등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

수급요건	세 부 내 용											
소득요건	①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을 것 ②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(근로, 사업, 기타, 이자, 배당, 연금, 종교인 소득의 합계)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											
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가구원 구성</th> <th>연간 총소득기준금액</th> <th>지급액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단독 가구<sup>1)</sup></td> <td>2,000만원</td> <td>3~150만원</td> </tr> <tr> <td>홀벌이 가구<sup>2)</sup></td> <td>3,000만원</td> <td>3~260만원</td> </tr> <tr> <td>맞벌이 가구<sup>3)</sup></td> <td>3,600만원</td> <td>3~300만원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가구원 구성	연간 총소득기준금액	지급액	단독 가구 <sup>1)</sup>	2,000만원	3~150만원	홀벌이 가구 <sup>2)</sup>	3,000만원	3~260만원	맞벌이 가구 <sup>3)</sup>	3,600만원
가구원 구성	연간 총소득기준금액	지급액										
단독 가구 <sup>1)</sup>	2,000만원	3~150만원										
홀벌이 가구 <sup>2)</sup>	3,000만원	3~260만원										
맞벌이 가구 <sup>3)</sup>	3,600만원	3~300만원										
재산요건	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 2억원 미만일 것 * 재산 합계액은 주택, 토지와 건축물, 승용자동차, 전세금(임차보증금), 금융재산, 현금, 유가증권, 회원권,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											

1) 홀벌이·맞벌이 가구에 해당하지 아니한 가구  
 2) 배우자(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)나 부양자녀(18세미만)가 있거나,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의 부 또는 모(각각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)가 있는 가구  
 3) 맞벌이 가구 : 배우자가 사업소득(총수입금액×업종별조정률), 근로소득(총급여액), 종교인 소득(총수입금액)을 합한 금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

### 총소득 합계액의 계산방법(조특법시행령 제100조의3)

- 근로소득 : 총급여액
- 사업소득 : 총수입금액 × 업종별조정률(20%~90%)
- 이자·배당·연금소득 : 총수입금액
- 기타소득(종교인소득 제외) : 총수입금액 - 필요경비
- 종교인소득 : 총수입금액

-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지급(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11)

## 3

### 자녀장려세제(CTC)

- 소득이 적은 근로자·자영업자 가구 등에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비 지원을 위해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
- 가구원, 소득, 재산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

수급요건	세 부 내 용		
가구요건	부양자녀(18세 미만)가 있을 것		
소득요건	①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을 것		
	②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*(근로, 사업, 기타, 이자, 배당, 연금, 종교인 소득의 합계)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		
	가구원 구성	연간 총소득기준금액	지급액 (자녀1인당)
	홀벌이 가구	4,000만원	50~70만원
	맞벌이 가구		
* 총소득 합계액의 계산방법은 근로장려세제와 동일			
재산요건	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 2억원 미만		

- 부양자녀 1인당 최대 70만원 이내에서 자녀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지급 (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11의2)

## 4 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

### 1) 종교인 소득 신고 유형에 따른 장려금 신청방법

#### → 근로소득으로 신고한 경우

'19년 귀속분에 대해 정기(5월) 신청 가능  
'20년 귀속분은 반기(상반기분 9월, 하반기분은 다음해 3월) 신청이 가능  
(반기신청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'21년 5월 정기신청 가능)

#### → 종교인소득으로 신고한 경우

'19년 귀속분에 대해 정기(5월) 신청 가능  
'20년 귀속분은 반기신청이 불가능함('21년 5월에 정기신청)  
\* 근로소득으로 신고한 경우에 한해서 반기신청 가능

### 2) '19년 귀속분 장려금 신청기간

근로·자녀장려금을 받으려는 거주자는 '20년 5월 1일~6월 1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 신청하여야 하며,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한 후 신청 기간에 신청할 수 있음

\* 기한 후 신청 :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('20.6.2.~11.30.)

### 3) 신청방법

전자신청\*과 서면신청\*\* 방법이 있으며 전자신청하는 경우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쉽고 편리하게 신청 가능

\* 전자신청 : ARS (☎1544-9944), 모바일 앱(국세청 홈택스), 인터넷(www.hometax.go.kr) 이용

\*\* 서면신청 :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

#### ●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

신청안내문(4월말~5월초 우편 및 모바일 발송)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편리하게 전자신청(ARS, 모바일 앱, 인터넷) 가능

-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

국세청 홈택스(www.hometax.go.kr)에서 전자신청하거나 우편 등으로 서면 신청 (ARS, 모바일 신청 불가능)

➔ **장려금 「미리보기 서비스」를 통해 신청기간 중 신청자격 확인 가능**

장려금 신청 전에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·모바일을 통해 신청대상 여부 및 예상수금액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

**[홈택스]** 국세청 홈택스 접속 → 공인인증서 로그인 → (메인화면에서) 신청/제출 → 근로장려금·자녀장려금(정기/반기) → 미리 보기 → 신청대상 여부 확인

**[모바일]** 국세청 홈택스 앱에 접속 → 공인인증서 로그인 → (메인화면에서) 신청/제출 → 근로·자녀장려금(정기/반기) → 미리보기 → 신청대상 여부 확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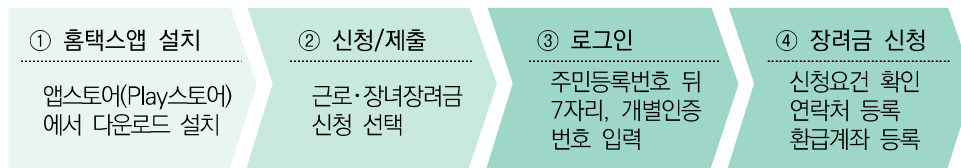
#### 4) 신청방법별 이용 절차

- ARS 신청(이용시간 06~24시)

1544-9944로 전화하여 장려금 신청을 선택하고 신청안내문(문자메시지)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(8자리)와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한 후, 안내에 따라 신청 진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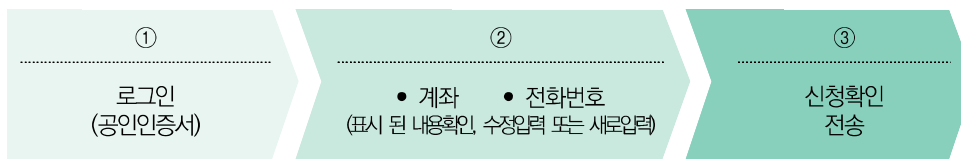
- 모바일 신청(이용시간 06~24시)

개별인증번호(8자리)를 부여받은 경우 가능하며,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신청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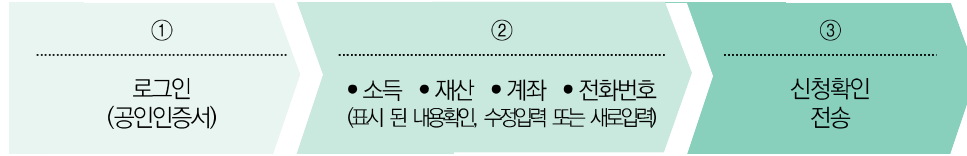
- 홈택스 신청 (간편신청 :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)

\* 국세청 홈택스(www.hometax.go.kr)에 접속하여 신청  
(이용기간 : 5.1~11.30. 이용시간 : 매일 06시~24시)



● 홈택스 신청 (일반신청 :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)

\* 국세청 홈택스(www.hometax.go.kr)에 접속하여 신청  
(이용기간 : 5.1~11.30. 이용시간 : 매일 06시~24시)



※ 홈택스 신청 공통사항 : 회원 가입없이 본인인증(공인인증, 휴대전화, 신용카드)만으로 신청가능

### 5) '20년 반기소득분(근로소득) 근로장려금 신청방법

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지급 받으려는 거주자는 '20년 상반기분 급여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9.1.~9.15, 하반기분 급여에 대해서는 '21.3.1.~3.15.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함(세부 신청방법은 정기분 신청방법과 동일)

## 5 장려금 지급 및 총당·감액

-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장려금을 결정하며, 5월 정기 신청분에 대하여는 9월 말까지 지급
  - \* (반기별 신청) 상반기 신청분(9월)은 12월 지급, 하반기 신청분(다음연도 3월)은 6월 지급
  -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지급제외 되거나 지급액이 변경(감액·증액)될 수 있음
-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%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한 후, 남은 금액을 지급
-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이거나 기한 후 신청한 경우 결정된 장려금에서 일정 비율을 차감하여 지급하며, 자녀장려금 지급대상자(배우자 포함)가 소득세 신고 시에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자녀장려금에서 자녀세액공제 받은 금액이 차감됨
  - 장려금 지급액 감액 유형

구 분	적 용
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~2억원 미만	장려금 산정금액의 50%를 차감하여 지급
기한 후 신청	장려금 산정금액의 10%를 차감하여 지급
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 중복 신청	자녀세액공제 금액을 차감

## 6 허위 신청자에 대한 불이익

신청자가 신청요건에 관한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지급한 근로·자녀 장려금을 환수하며 향후 지급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

-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2년간 지급제한
-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5년간 지급제한



## 8 근로·자녀장려금

Question	Answer																								
<p><b>Q89.</b> 장려금 신청 요건 중 「총소득기준금액」이란 무엇을 말하는지?</p>	<p>「총소득기준금액」이란 가구원 구성(단독, 홑벌이, 맞벌이)을 감안하여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총소득의 범위를 아래 금액 미만으로 각각 다르게 규정한 것임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>단독가구</th> <th>홑벌이 가구</th> <th>맞벌이 가구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근로장려금</td> <td>2,000만원</td> <td>3,000만원</td> <td>3,600만원</td> </tr> <tr> <td>자녀장려금</td> <td colspan="3">4,000만원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- 총소득기준금액 계산 시 총소득이란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(근로소득, 종교인소득, 이자소득, 배당소득, 기타소득, 연금소득, 사업소득을 합산한 금액)을 의미하며,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, 퇴직소득, 양도소득은 포함되지 않음</p>	구분	단독가구	홑벌이 가구	맞벌이 가구	근로장려금	2,000만원	3,000만원	3,600만원	자녀장려금	4,000만원														
구분	단독가구	홑벌이 가구	맞벌이 가구																						
근로장려금	2,000만원	3,000만원	3,600만원																						
자녀장려금	4,000만원																								
<p><b>Q90.</b> 「총소득」과 「총급여액 등」은 어떻게 다른지?</p>	<p>「총소득」은 장려금 대상요건을 판단하는 기준금액이며 「총급여액 등」은 장려금 지급금액을 결정하는 기준금액임</p> <p>- 「총소득」과 「총급여액 등」의 계산은 거주자와 배우자의 아래 표의 해당 금액을 합산함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>금액</th> <th>총소득</th> <th>총급여액 등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근로소득</td> <td>총급여액</td> <td>○</td> <td>○</td> </tr> <tr> <td>종교인소득</td> <td>총수입금액</td> <td>○</td> <td>○</td> </tr> <tr> <td>사업소득</td> <td>총수입금액×업종별조정률</td> <td>○</td> <td>○</td> </tr> <tr> <td>이자·배당 연금소득</td> <td>총수입금액</td> <td>○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기타소득*</td> <td>총수입금액 - 필요경비</td> <td>○</td> <td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* 소득세법 §21①26호 종교인소득 제외</p>	구분	금액	총소득	총급여액 등	근로소득	총급여액	○	○	종교인소득	총수입금액	○	○	사업소득	총수입금액×업종별조정률	○	○	이자·배당 연금소득	총수입금액	○		기타소득*	총수입금액 - 필요경비	○	
구분	금액	총소득	총급여액 등																						
근로소득	총급여액	○	○																						
종교인소득	총수입금액	○	○																						
사업소득	총수입금액×업종별조정률	○	○																						
이자·배당 연금소득	총수입금액	○																							
기타소득*	총수입금액 - 필요경비	○																							
<p><b>Q91.</b> 가구요건, 재산요건의 판단기준일은 언제인지?</p>	<p>배우자, 부양가족, 부양부모 등 가구원 해당여부는 전년도 12월31일 기준에 따르고, 재산의 소요기준일은 전년도 6월 1일을 기준으로 판단함</p> <p>- 재산요건 기준일을 6월 1일로 규정한 것은, 지방세법상 주택·토지·건축물 등에 대한 시가표준액이 6월 1일을 기준으로 작성·관리되기 때문임</p>																								

Question	Answer
<p><b>Q92.</b> 종교단체가 종교인소득을 지급하고도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, 장려금은 어떻게 신청하는지?</p>	<p>종교단체가 종교인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, 종교인이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고 급여대장 등 소득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음</p> <p>- 종교인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, 지급명세서를 다음해 3월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함</p>
<p><b>Q93.</b> 종교인소득과 사업소득이 같이 있는 경우 장려금을 어떻게 산정하는지?</p>	<p>종교인소득,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산정된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가구원 구성(단독가구, 홑벌이가구, 맞벌이가구)에 따라 장려금을 산정함</p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"> <p><b>〈예시〉 맞벌이가구, 18세 미만 자녀 2명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본인의 종교인소득 1,500만원이 있고, 배우자가 학원을 운영하면서 연간 매출액이 3,000만원이 있는 경우</li> <li>- 「총급여액 등」은 3,750만원*임 * 1,500만원+(3,000만원×75%)</li> <li>- 「총급여액 등」 3,750만원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0원(총소득기준금액 3,600만원 초과), 자녀 장려금은 106만8천원(53.4×2명)임</li> </ul> </div>
<p><b>Q94.</b> 부부가 모두 「총급여액 등」이 있는 경우 각각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?</p>	<p>▶ 원칙적으로, 부부 중 총급여액 등이 많은 주소득자가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음</p> <p>- 다만, 주소득자의 배우자가 장려금을 신청한 때에는 주소득자인 거주자가 신청한 것으로 간주</p> <p>▶ 거주자의 배우자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거주자와 배우자 중 주소득자를 다음의 순서에 따라 정함</p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"> <p><b>주소득자 판단 순서(소득법 §100의6④)</b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거주자 간 상호합의로 정한 사람</li> <li>2. 거주자 또는 배우자 중 총급여액 등이 많은 사람</li> <li>3.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에 근로·자녀장려금을 받은 사람</li> </ol> </div>
<p><b>Q95.</b>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 외 가족의 소득자료도 확인할 수 있는지?</p>	<p>개인정보보호정책에 따라 본인 소득만 확인할 수 있으나, 배우자가 소득 열람에 동의한 경우에는 배우자의 소득도 확인할 수 있음</p>

Question	Answer
<p><b>Q96.</b> 국세청에 수록된 소득자료와 실제 소득이 다를 경우, 장려금을 어떻게 신청하는지?</p>	<p>종교인소득·근로소득·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가 사실과 다르게 제출되었거나 미제출된 경우에는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국세청 홈페이지에 해당 사실을 신고한 후 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세무서에서 사실 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함</li> <li>* 국세청 홈페이지 → 국민소통 → 신고센터 → 지급명세서 미제출·허위제출신고</li> </ul>
<p><b>Q97.</b> 장려금 신청 요건 중 재산요건을 판단할 때 포함되는 재산의 범위는 무엇이며, 평가방법은 어떻게 되는지?</p>	<p>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전년도 6월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토지·건물·자동차·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재산의 종류 및 평가방법은 아래와 같음(재산가액 평가시 부채는 차감하지 아니함)</li> </ul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"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지방세법에 따른 토지 및 건축물 : 시가표준액</li> <li>• 지방세법에 따른 승용자동차 : 시가표준액</li> <li>• 주택전세금 : 간주전세금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실제 전세금이 간주전세금보다 더 낮은 경우로서 신청자가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한 때에는 실제 전세금</li> <li>- 다만, 거주자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(그 배우자를 포함)으로부터 임차한 경우에는 간주전세금</li> </ul> </li> <li>• 상가임차보증금 : 임대차계약서 상의 실제 전세금</li> <li>• 현금</li> <li>• 금융재산 : 전년도 6월1일 기준 개인별 금융재산의 잔액</li> <li>• 회원권 : 전년도 6월1일 기준 시가표준액</li> <li>• 유가증권 :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주식 또는 출자지분, 국채, 지방채 특별법이 따라 발행된 채권, 회사채 등</li> <li>- 상장주식은 전년도 6월1일 현재 최종시세가액, 비상장주식 및 채권은 액면가액</li> </ul> </li> <li>•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: 전년도 6월1일 현재까지 불입한 금액</li> </ul> </div>
<p><b>Q98.</b> 실질은 종교단체 소유의 부동산임에도 부득이 종교인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, 재산요건 판정은 어떻게 하는지?</p>	<p>장려금 재산요건 소유자 판정은 평가기준일(6.1.)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,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신청자가 부동산을 사실상 소유자가 아님을 입증한 경우에는 장려금 지급 가능</li> </ul>

Question	Answer
<p><b>Q99.</b> 형편이 어려워 부모님 집에서 같이 살면서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, 재산요건 판정시 부모님 주택과 재산을 포함하여 계산하는지?</p>	<p>주민등록상 별도세대 구성 여부와 관계없이 거주자의 주소·거소의 소유자가 직계존비속인 경우 해당 직계존비속은 가구원에 해당함</p> <p>- 따라서, 부모님의 주택과 재산을 포함하여 재산요건을 판단함</p>
<p><b>Q100.</b> 재산가액 평가시 부채를 차감하는지?</p>	<p>재산가액 평가 시 부채를 차감하지 않음</p> <p>- 재산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지 않는 대신 2015년부터 재산요건을 1억원에서 1억4천만원, 2017년부터 자녀장려금 재산 요건을 1억4천만원에서 2억원, 2019년부터는 근로·자녀장려금 모두 재산요건을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음</p>
<p><b>Q101.</b> 부모가 소유한 주택을 자녀에게 무상으로 임대하여 준 경우 전세금의 평가 방법은?</p>	<p>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(그 배우자를 포함)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는 간주전세금(시가 표준액의 55%)으로 평가함</p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margin-top: 10px;"> <p><b>조심2014중2006(2014.6.20.)</b></p> <p>무상 임대에 대하여 임차주택 전세금 평가방법을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간주전세금으로 평가하여야 함</p> </div>